

독도와 한일관계: 일본의 독도인식을 중심으로

郭 眞 吾*

(e-mail : ojkwak@historyfoundation.or.kr)

目 次

- | | |
|---------------------|------------------------|
| 1. 문제제기 | 3. 근대 독도에 대한 한일의 입장 |
| 2. 근세 독도에 대한 한일의 입장 | 3-1 지도로 보는 근대일본의 독도인식 |
| 2-1 한국의 독도인식 | 3-2 공문서로 보는 근대일본의 독도인식 |
| 2-2 안용복과 독도인식 | 3-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 2-3 일본의 초기 독도인식 | 4. 결론 및 시사점 |
-

1. 문제제기

오늘날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이 섬을 각각 독도(獨島)와 다케시마(竹島)라 부른다. 그러나 이 명칭들이 채택되기 전에는 다양한 이름들이 독도를 호칭하는데 사용되었다. 독도는 한국에서 우산도(于山島), 가지도(可支島), 석도(石島) 등으로 불리어졌다. 그러나 이런 이름 중에서도 우산도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었고,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석도가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했다. 석도는 독섬의 한문표기이며, 독섬은 울릉도 방언으로 바위섬을 의미한다. 즉, 독섬이 그 의미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석도(石島)라고 표기되는 것이며, 발음에 따라 한문으로 옮겨졌을 때 독도라고 표기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1905년에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은 17세기 이후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부르다가, 19세기말 이후에는 리양꼬도(リヤンコ島), 랑코도(ランコ島), 다케시마(竹島) 등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특히,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주목을 끄는 점은 일본인들이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로,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호칭해오다, 20세기 초부터 갑자기 독도를 다케시마로 울릉도를 마쓰시마로 변경하여 호칭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667년 일본에서 출간된 풍토기(風土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 독도와 울릉도는 각각 마쓰시마(송도)와 다케시마(죽도)로 표기되어 있다. 그때부터 독도를 지칭하는 일본 이름은 마쓰시마였다. 19세기 후반 경부터는 리양꼬(또는 랑코)라는 이름도 쓰였는데, 이는 서양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 포경선 리양쿠르호의 일본식 표기이다. 당시 독도를 목격한 프랑스인들은 배의 이름(Liancourt)을 따서 독도를 ‘리양쿠르 암(Liancourt Rocks)’이라 명명했다. 그 후 리양쿠르 암은 서양인들이 독도를 호칭할 때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 되었다. 1905년부터, 일본인들은 독도를 현재 명칭인 다케시마로 부르고 있으며, 이는 ‘대나무 섬’을 의미한다. 공식, 비공식을 막론한 어떤 일본 측 자료도 바위투성이 섬 독도가 왜 대나무 섬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근세 그리고 근대 문헌을 통해서 본 독도연구서들이 한일양국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졌다.¹⁾ 그러나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서들과 다른 점은 근세에서 근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이 기여 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독도정책이 명확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모순아래 주장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독도정책의 모순과 영유권 주장의 한계를 밝힐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하겠다.

2. 근세에 독도에 대한 한일의 입장

한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은 ‘독도(獨島)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처럼 독도에 대한 영유권의식이 명확하다. 그러나 일본에 의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국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명백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일양국 관계를 손상시키는 일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는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독도에 대한 대일 입장은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1) 기존의 연구로는, 송병기(1999·2004), 신용하(1996·1999), 최장근(1998·2009)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정확한 문헌의 뒷받침 없이 일방적임을 비판하는 입장이며, 그리고 内藤正中·朴炳涉(2007), 内藤正中·金炳烈(2007), 内藤正中(2008), 등의 한일공동학자들의 연구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논리의 모순임을 다수의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오래전부터 다양한 공문서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이에 대한 논리를 구축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독도가 한국고유의 영토임을 사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동시에 일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한 역사적 선례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2-1. 한국의 독도인식

독도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울릉도에서 시작된다. 이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근거를 최초로 제공하는 시기가 서기 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울릉도·독도를 포함하고 있는 우산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서기 512년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여기에 신라의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한 計巧로써 우산국을 정복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²⁾

<표 1> 울릉도·독도 관련 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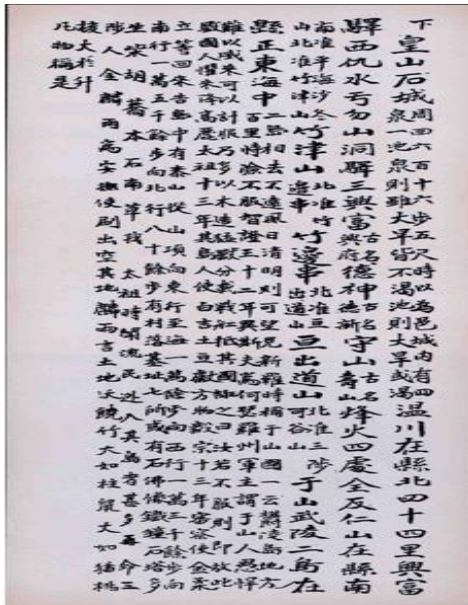
서기	왕조	왕대	관련 연표	근거자료
512	신라	智證王 13	이사부, 우산국 정벌	『三國史記』 卷4, 新羅本記 4, 智證王立千 13年 6月條

당시 우산국의 영토는 울릉도 본섬과 그 부속도서인 독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해에 울릉도와 독도 두 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리적 인식은 그 후 조선시대에 간행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중종 26년)에도 나와 있다. 아래 그림 1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 무릉 두 섬은 현의 동쪽해중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 우산국이라 칭했다”³⁾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한국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은 고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보다는 관련근거가 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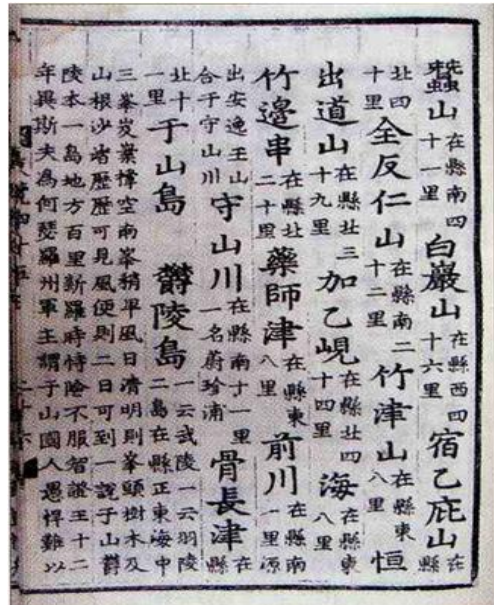
2) 강봉룡(2010)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의의」 『한국이사부학회』 창간호, p. 266

3) 세종실록지리지(1454, 권 153)

<그림 1>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권 153)



신증동국여지승람(규장각소장)

이하 연표에도 나타나있듯이 이 두 책에는 독도가 조선의 강원도에 속하는 섬임을 표시하고 있다.

<표 2> 울릉도·독도 관련 연표

서기	왕조	왕대	관련 연표	근거자료
1454	조선	世宗 26	『세종실록』 「지리지」에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于山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風日清明則可望見])”고 함.	『世宗實錄』 卷153, 地理誌, 江原道, 三陟都護府, 蔚珍縣
1530		지리지 中宗 25	『新增東國與地勝覽』에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 [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이 고을 바로 동쪽 바다 가운데	『新增東國與地勝覽』 卷45, 蔚珍縣, 于山島, 鬱陵島條 ※ 신증동국여지승람은 편찬시기(1530) 및 간행시기(1531)가 혼동되어 사용

		데 있다. (于山島 鬱陵島 [一云武陵一云羽陵二島在縣正東海中]”이라고 함.	되고 있으나 여기서는1530년을 채용
--	--	--	----------------------

2-2. 안용복과 독도인식

17세기 말에 소위 ‘안용복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독도를 이해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건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당시 조선의 어부 안용복의 활동으로 조선과 일본이 최초로 정부차원의 외교적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문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속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 박어둔 이하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 오야(大谷)가문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島主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번(鳥取藩)의 호키슈(伯耆州)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도쿠가와 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조선으로 귀국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안용복의 활동과 일본 중앙정부의 결정은 겐로쿠(元祿)시대(1688~1704)의 일본 측 기록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안용복의 도일(渡日)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침범은 계속되었으며, 결국 안용복은 이의 근절을 위해 그의 두 번째 도일을 감행하게 된다. 1696년 일본인들의 동해에서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울릉도에 입도(入島)한 안용복은, 거기서 일본인 어부들과 다시 조우하게 되며, 일본인 어부들을 쫓아 오키섬을 재차 방문하게 된다. 다시 오키도주 앞에 선 안용복은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결국 안용복의 2차 도일의 결과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고 양도(兩島)에 대한 일본인들의 도해(渡海)를 금지하였다.⁴⁾

4) 손승철(2010) 「조선시대 ‘空島政策’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 『한국이사부학회』 창간호, p. 296

<표 3> 울릉도·독도 관련 연표

시기	왕조	왕대	관련 연표	근거자료
1694		肅宗 20	삼척침사 장한상(張漢祥), 울릉도 수토사로 다녀옴. 일행 총 150명, 기선 2척, 급수선 4척 9/20~10~13 (13일간 체류)	『肅宗實錄』卷27 肅宗 20年 8月 己酉條 『울릉도 사적』
1696	조선	肅宗 22	안용복, 울릉도에 출어한 일본 어선을 쫓아 송도(松島/독도) 옥기도(玉岐島/오키도)를 거쳐 백기주(伯耆州/호키주)로 가서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도·자산도 등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받았는데, 이나라에서는 정식(正式)이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渠言頃年吾入來此處以鬱陵子山等島定以朝鮮之界至有關白書契以本國不有定式今又侵犯我境是何道理云爾)”라고 하고 재차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땅임을 확인 받고 옴	『肅宗實錄』卷30, 肅宗 22年 8月 壬子條 / 卷30, 22年 9月 庚辰/ 戊寅條, 『增補文獻備考』 31 「與地考」 19, 『朝鮮通交大紀』 8 「善隣通交事考」, 「告竹島一件事考」

일본학자들은 안용복의 활동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의 진술이 거짓이라 하며 역사적인 안용복의 도일활동 결과를 부정하려 하지만, 안용복 사건은 일본 측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안용복의 활동을 기록한 일본 측 자료에는 조선통고대기(朝鮮交通大記), 백기민담기(伯耆民談記), 초려잡기(焦慮雜期), 교린고략(交隣高略), 죽도고(竹島考), 인부연표(因府年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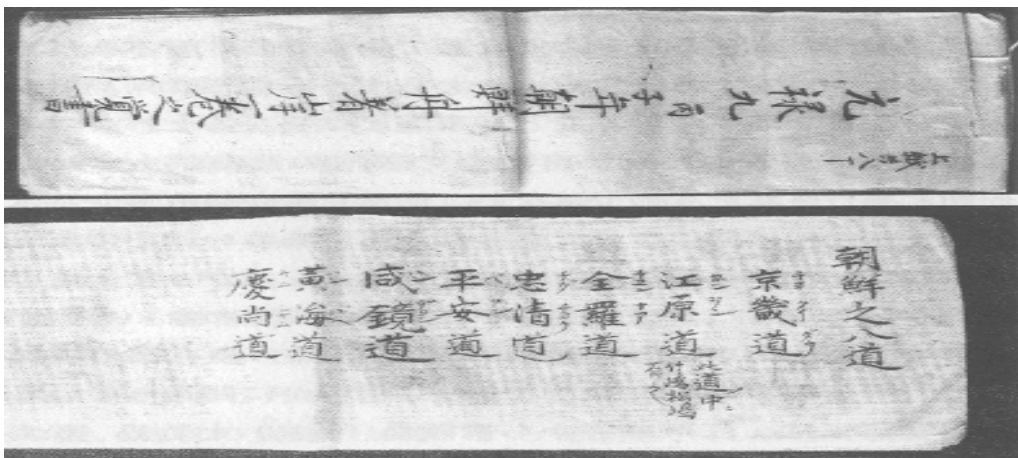
2-3. 일본의 초기 독도인식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이 독도를 처음 인식했던 시기는 우산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서기 512년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그러나 독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일본 기록은 17세기 중반의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일본 이즈모지방(出雲地

方)의 관료인 사이토 간스케(齊藤勘助)⁵⁾가 편찬한 풍토기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 기록되어 있다. 은주시청합기는 “북서 방향으로 2일 1야를 가면 송도(독도)가 있다. 그곳에서 다시 1일 정도에 죽도(울릉도)가 있다(戊亥間行二日一夜有松嶋 又一日程有竹嶋).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소다케시마(磯竹嶋)로 대나무나 물고기, 강치가 풍부하다. 이 두 섬은 무인의 땅이다. 이곳에서 고령을 보는 것은 윤슈(雲州)에서 인슈(隱州)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 즉 일본의 서북 한계는 이주까지로 한다(然則日本之乾地 以此州爲限矣).”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은주시청합기의 기록을 그들의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독도가 오끼섬의 부속도서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해왔다. 그러나 은주시청합기의 “일본의 북쪽경계는 이주(오끼섬)를 한계로 한다.”라는 구절은 우리 측에 의해 당시 일본인들이 독도가 그들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답변한 자료들을 볼 것 같으면, 첫째, 1695년 돛토리번의 회답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돛토리번(鳥取藩)에 귀속한 시기를 문의하는 에도막부의 질문에 대해 돛토리번은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 및 그 외에 돛토리번에 속하는 섬은 없다’고 회답하였다. 둘째, 1696년 5월 일본으로 건너간 안용복을 조사한 문건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에는 안용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이라고 명기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2>



江原道の中に「竹嶋 松嶋有之」と書かれている(村上家文書)

5) 사이토 토요노부(齊藤豊宣)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안용복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696년 5월 안용복 일행이 타고 온 배의 크기와 장비, 인원, 오키에 온 이유와 경위,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안용복이 당시 일본에서 ‘竹島(죽도)’ ‘송도(松島)’라고 부르는 두 섬이 조선의 강원도에 속함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朝鮮之八道」 지도를 소지하고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3. 근대에 독도에 대한 한일의 입장

18·19세기를 거치면서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독도소유에 대한 명분으로 일본이 들고 있는 내용이 고유영토와 무주지선점이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이 모순이라는 것은 1667년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 “일본의 서북쪽 한계는 이주(오키섬)까지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1695년 돗토리번의 회답서등에 일본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근대에 들어와서는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일본이 이처럼 과거의 기록을 무시하고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1905년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독도가 군사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⁶⁾ 그리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독도를 고유영토 또는 무주지 선점 지역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근대에 있어서 한일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3-1. 지도로 보는 근대일본의 독도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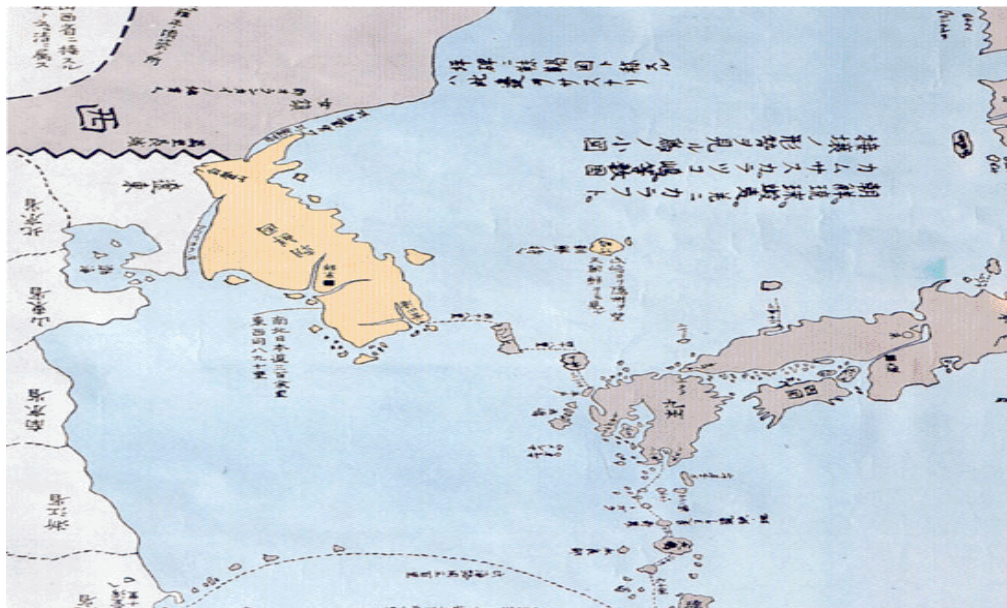
근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사회의 교역증가와 서양세력에 의한 서세동점(西勢東占)은 유럽 국가들의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당시 교류는 육로보다도 해로가 주요교통수단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항해에 필요한 지도였는데 당시 서양인에 의해 그려진 지도 중 일부는 울릉도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시되어있다.⁷⁾ 그 대표적인 지도가 삼국접양지도인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6) 1905년 2월 일본은 독도편입과 동시에 독도이외에도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 울산, 죽변 등에 망루를 설치하는데 이는 러일전쟁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에 있어서 독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 이기도 했다.

7) 근대초기에 그려진 일본지도는 일본인들이 직접그린 것 보다는 서양인들에 의해 그려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대량의 지도들이 제작되었다.

같이 동일한색으로 표시한 후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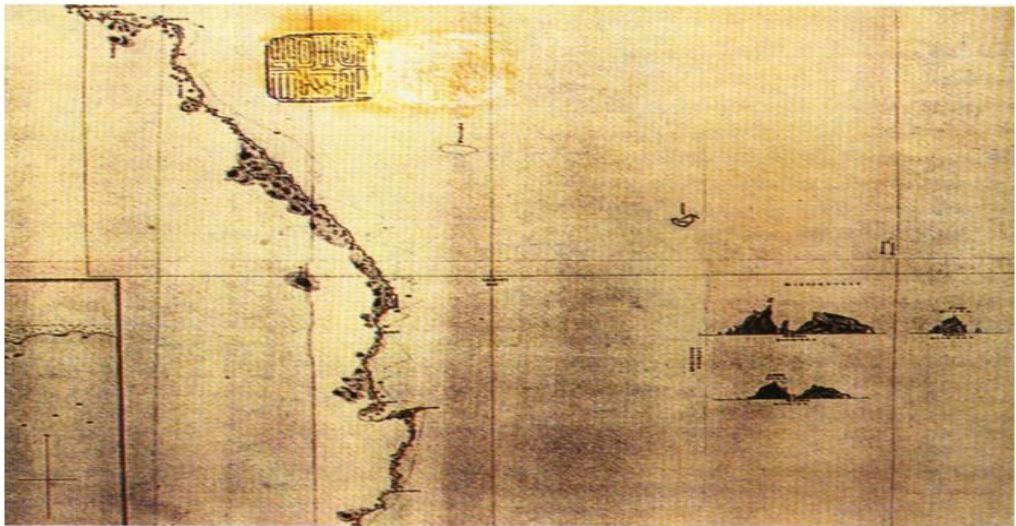
1875년 일본에서 만든 삼국접양지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⁸⁾에 의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 1785년)’부록의 ‘삼국접양도(三國接壤圖)’에서는 죽도에 대해서 ‘조선의 소유다(朝鮮の持也)’라고 주(注)에 기록되어 있어 조선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오늘날 지도에 비해 거리상으로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송도(독도)도 그려져 있다. 그리고 1876년 일본 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인데 일본 해군성은 「조선동해안도」(1876년)에 독도를 한국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⁹⁾

8) 1738년~1793년, 이름은 도모나오(友直), 에도(江戸)후기의 경세비평가 다테(伊達, 지금의 센다이(仙台)번에서 태어나 나가사키, 에도에서 공부했으며 육무제주인(六無齋主人)이라는 이명도 있다. 주요 저서로는 상기서 외에 『해국병담(海國兵談)』 등이 있다.

9) 1857년 러시아 해군이 작성한 지도를 번안하여 1876년 일본해군이 작전용으로 재발행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한반도 동부 해안의 포구와 해안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가 부속도서로 상세히 그려져 있다. 거리와 방향이 각기 다른 세 개의 독도 스케치는 1860년에 러시아 해군이 추가한 것이다.

<그림 4>



일본해군성의 조선동해안도(1876), 일본해군성은 독도를 조선의 소속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에 있어서 지도로 본 일본의 독도인식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명확히 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해 무주지 선점과 고유영토를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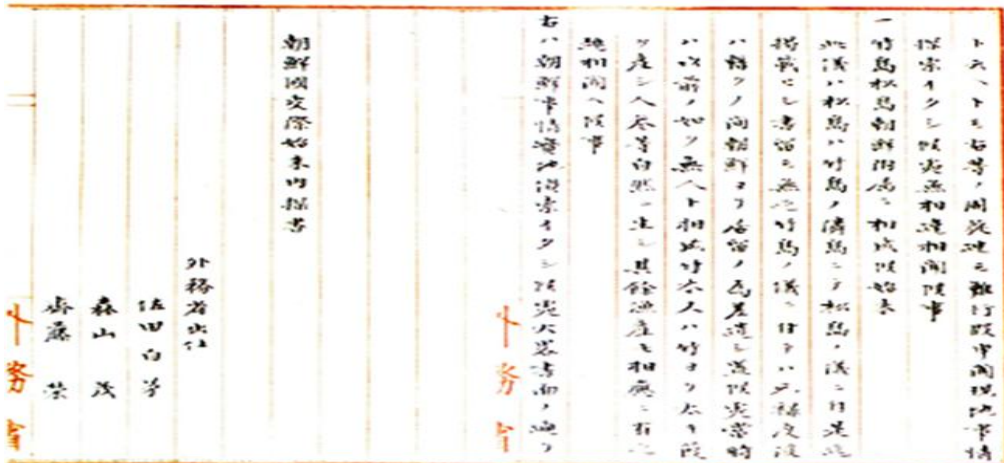
3-2. 공문서로 보는 근대일본의 독도인식

그리고 지도는 아니지만 공문서상에도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를 들 수 있다. 이는 1869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선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관리들이 이듬해(1870년)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시말(始終, 事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⁰⁾ 즉 “이 건의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이웃 섬으로서, 송도의 건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게재된 서류도 없다. 죽도의 건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이후 잠시 동안 조선으로부터 거류를 위해 빌린 바 있다. 당시는 이전과 같이 무인도였다. 대나무 또는 대보다 큰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이 저절로 난다. 그밖에 해산물도 있을 만큼 있다는 말을 들었다...”¹¹⁾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의 울릉도인 죽

10) 전년 12월까지 조선에 체재한 외무성관리 사다 하쿠가(佐田白茅)등에 의한 복명보고서이다. 일본 정부는 1869년 3명의 외무성관원을 조선에 보내 조선의 내부사정을 알아보도록 지시하여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 있는 전말’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70년 4월, 조선에 파견된 외무성 관원에 의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도에 대해서는 겐로쿠 연간 이후, 잠시 동안은 조선에 의해 거류민을 파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전처럼 무인도가 되어 있다.....”¹²⁾고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초기 근대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는 기록이다.

<그림 5>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1870), 일본의무성 문서로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근대 일본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 증거로는 메이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또 하나의 증거이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관내의 지적(地籍)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하고 있던 시마네현으로부터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현의 관할 지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1876년 10월 16일자로 접수하게 된다. 이를 접수한 내무성은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 문서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일본과 조선사이의 왕복 문서들을 모두 조사해 본 후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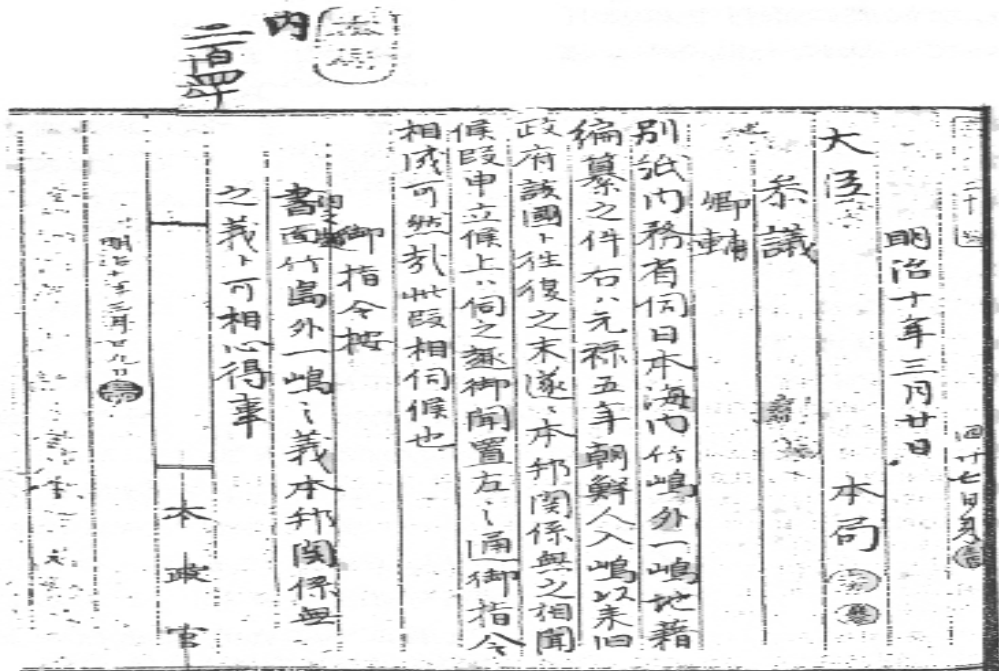
그러나 영토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무성 단독으로 시마네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하달하지 못하고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결정을 받기 위하여 이듬해인 1877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태정관에 제출하게 된다. “일본해내 죽도의 일도 지적 편찬에 대한 질의서(日本海内 竹

11)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1870)

12)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1870)

島外一島 地籍編纂方何)...일본은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영토의 처리 문제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품의합니다.”¹³⁾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 문서에서 ‘죽도 외일도(竹島外一島)’의 ‘일도(一島)’가 바로 독도라는 사실이다. 즉 송도(독도)에 대해서는 ‘외일도’로 이름 없이 취급한 다음 별지 서류에서 다시 “다음에 섬이 하나 있는데 송도라고 부른다. 둘레의 주위 30정보 정도이며, 죽도와 동일한 뱃길 상에 있다.”¹⁴⁾라고 하면서 이 섬이 송도 즉 독도임을 밝히고 있다.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위 문서상의 묘사에 부합하는 섬은 오로지 독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내무성은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대해 품의 하였던 것이다.

<그림 6>



明治10(1877)年3月29日太政官指令書(國立公文書館所藏)

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하게 된다. “별지 내무성이 품의한 일본해 내 죽도 외 일도의 지적 편찬에 관한 건의는 겐로쿠 5년 조

13) 일본태정관문서(1877)

14) 일본태정관문서(1877)

선인이 입도한 이래 舊정부와 조선간의 문서왕복의 결과, 마침내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들어 상신한 품의의 취지를 듣고 다음과 같이 지령을 작성하여 품의합니다. 指命案 품의한 취지의 죽도의 일도의 건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¹⁵⁾ 위 지령문에 명시된 것처럼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3-3.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1905년 2월22일 일본 시마네현은 독도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현 고시 제40호를 행하게 된다. 일본은 동 고시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인용해왔다. 그러나 일본 자신들도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영토편입 조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동 조치의 효력에 대해 일본은 대체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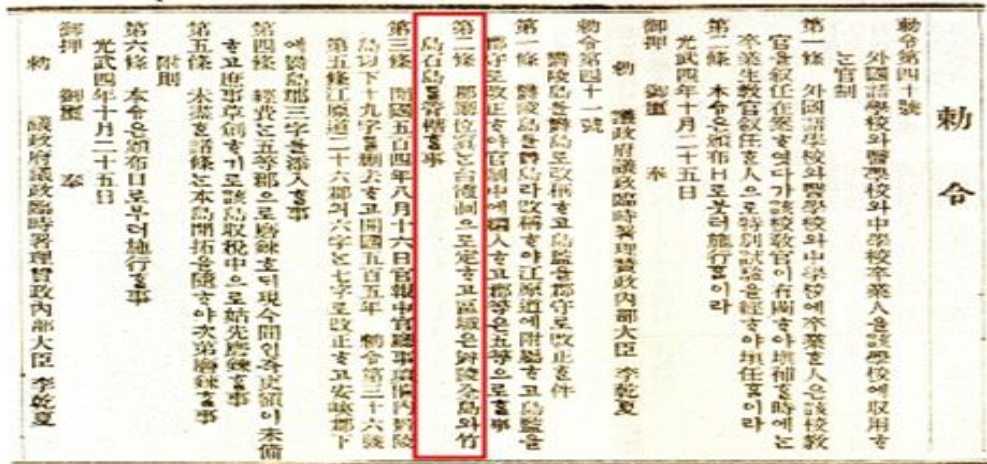
첫째 주장은 무주지 선점(無主地先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독도는 이전부터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terra nullius*)로서,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장은 고유영토(固有領土)에 바탕을 둔 것으로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고, 1905년 조치는 그 사실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905년 조치의 법적 효과에 대해 일본 정부조차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무주지여서 국제법상 선점’과 ‘고유영토’논리를 펴왔다. 일본은 1905년 1월28일의 내각결정에서 ‘이 무인도(독도)는 어떤 국가의 소유로도 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형적이 없다’고 하며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하였다. 일본은 1905년 독도의 편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자국의 고유영토였던 이 섬을 근대에 와서 다시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논리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를 억지로 결합 시켜 놓고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발표된 당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도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행해졌을 당시 독도가 무주지 이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자기부정의 논리이다. 앞서 언급했던 1877년의 태정관 지령의 예로부터도 증명될 수 있듯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일본이(도쿠가와 막부와 메이지 정부)스스로도 인정했던 사실이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5년 전인 1900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울릉

15) 일본태정관문서(1877)

도와 독도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황실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그림 7>



대한제국칙령41호(1900년), 대한제국은‘석도(독도)’를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조선정부가 서울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 칙령의 내용은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위의 설명에서 추론될 수 있듯이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국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의사를 알리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The Bonin Islands)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전 동경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도 편입 시에는 이 사실을 대한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¹⁶⁾ 일본이 독도편입 사실을 주일외국공관과 한국에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10년 전 삼국간섭으로

16) 국가의 의사로서 새로운 영토를 취득할 시에는 이 사실을 관련국에 통보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 간의 관례이다. 물론 이러한 영토취득의사의 대외적 표시의무가 예외적으로 면제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예외는 유명한 팔마스섬 중재사건(1928)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중재사건에서 단독심을 맡았던 막스 후버(Max Huber) 판사는 문제가 된 팔마스섬은 유인도(인구 약750명)로 이 섬의 거주자들은 타국이 동 도서를 점령하려 시도할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통보의 의무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부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독도의 편입을 은밀히 추진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승리의 전리품으로 중국의 랴오둥 반도를 얻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구 3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랴오둥 반도를 중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3국과 군사적 대결을 할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외국세력의 개입에 대한 일본의 우려와 민감성은 삼국간섭이란 쓰라린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독도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차이는 근세이전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사료를 통해서본 한일 간의 독도인식의 차이는 크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독도인식은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양한 문헌 속에 등장한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인식은 근세이후 근대에 들어와서도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가 일본영토가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지도와 공문서를 통해 여러 차례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독도를 고유영토와 무주지 개념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오랫동안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확신하고 있던 터라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한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기존의 고유영토주장에서 무주지 선점과 국제법적으로도 자국영토임을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일시적으로나마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은 일본의 팽창주의가 시작될 무렵인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는 일본문헌에도 밝히고 있듯이 러일전쟁에 즈음하여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함을 깨달은 일본군부와 외무성 그리고 농무성에 의한 무리한 영토편입추진임을 알 수 있다.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郎)가 작성한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와 그 당시 일본이 처했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문제가 있음이 명확해진다.

1911년에 작성된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는 1905년 일본이 독도의 영토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나카이의 어로 영업기록에는 독도 편입 청원서를 낸 그 자신조차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케시마어로합작회사가 펴낸 ‘1905년 이후의 행정관청왕복문서’(從明治38年行政諸官庁往復雜書類)에 들어있는 나카이의 이력서에는 ‘이 섬(독도)이 울릉도에 부속되어 한국 영토라고 생

각했으므로 장차 통감부에 대해 할 일이 있으리라 보고 상경했다'고 적혀 있다. 나카이의 이력서에는 또 '여러 가지로 획책하던 중, 당시 농상공부 수산국장 마타 다네오미에 의해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분주하던 끝에, 당시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츠키 가네유키 장군의 단정에 따라 이 섬이 완전히 무소속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되어 있다. 이는 독도에서 강제침해를 독점하고자 하는 나카이가 1904년 9월 내무성, 외무성 등에 '리양코도의 영토편입원'을 제출하자 시마네현의 의견을 들은 뒤 이듬해 1월 28일 각의 결정을 거쳐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편입을 공포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독도가 무주지여서 국제법상 '선점'(先占)논리에 의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역시 배치되는 내용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参考文献】

- 강봉룡(2010) 「이사부 생애와 활동의 역사적의의」 『한국이사부학회』 창간호, p. 266.
- 김병렬(1998)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전말」, 독도보전협회, 『독도영유권과 영해와 해양주권』 독도연구보전협회, pp. 165-195.
- (1998) 『독도』 다다미디어, pp. 414-417.
- 손승철(2010) 「조선시대 ‘空島政策’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 『한국이사부학회』 창간호, p. 296.
- 송병기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집』 자료총서34,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선집, pp. 278.
- 신용하(1996) 『독도, 보배로운 한국영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총비판』 지식산업사, p. 188.
-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p. 260.
- 이한기(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교출판부, p. 299.
- 최장근(1998) 『일본영토의 분쟁』 백산자료원.
- (2009) 『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제이앤씨.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 內藤正中・朴炳涉(2007) 『竹島=獨島論爭 歴史資料から考える』 新幹社.
- 內藤正中・金病烈(2007) 『竹島・獨島=史的檢證』 岩波書店.
- 內藤正中(2008) 『竹島=獨島問題入門』 日本外務省 『竹島』 批判, 新幹社.
- 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海外交渉關係綴(竹島關係綴)』 (昭和 28年)
- 梶村秀樹 「竹島=獨島問題と日本國家 (付・資料)」 『朝鮮研究』 一九七八年 九月号
- 外務省編(1976)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 明治百年史叢書1, 原書房.
- 日本外務省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
- 下條正男(2006)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藝春秋.
- 竹島の領有, 外務省條約局. 昭和28年 8月.
- 獨島研究總書(2003) 「韓國의 獨島領有權研究史」 『獨島學會編』 제10권.
- 日本外交省編(1970) 『日本外交文書』 第18卷.

要 旨

본 연구는 일본의 독도인식과 한일관계를 통해서 본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의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과거사문제와 맞물려 자주 한일 간에 현안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헌에는 6세기부터 근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관련 내용이 자주 언급 된다. 그래서 한국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고유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늦은 17세기부터이다. 그리고 일본의 근세와 근대자료에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데 일부 공문서에는 오늘날의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역으로 해석해보면 독도는 한국영토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고문서에서 지금의 독도에 대해 한국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고, 한발 더 나아가서 무주지 이었던 독도를 1905년에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일본이 주장하는 고유영토, 무주지 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며 동시에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여러 고문서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キーワード： Perception of Dokdo, past historical affairs, inherent territory, unowned land.

투 고 : 2010. 5. 31
1차 심사 : 2010. 6. 12
2차 심사 : 2010. 6. 26